

WTO/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

- 국내 주류업계와의 관련문제 중심으로 -

I. 머리말



문 삼 섭

〈특허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 目 次 ■

- I. 머리말
- II. 지리적표시보호의 연혁과 개념
- III.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의 보호 내용
- IV.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 규정
- V. WTO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항후 협상과제
- VI. TRIPs 협정과 국내주류업계와의 관련문제 및 대응방안
- VII. 맺음말

우리는 “샴페인(Champagne)”이라는 말을 들을 때 프랑스라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거품이 나는 포도주”를 생각하고, “코냑(Cognac)”은 프랑스의 작은 도시보다도 “떡갈나무통에서 숙성된 브랜디”로 연상하며, “데낄라(Tequila)”는 멕시코 칼리스코주의 한 도시보다는 “선인장으로부터 증류된 술”을 연상하게 된다. 즉, “Champagne”, “Cognac”, “Tequila”를 혼존하는 장소, 도시, 지역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지리적인 명칭으로 인식하기 보다 특정한 성질과 품질을 가진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지리적표시가 높은 명성을 얻어서 상업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지리적표시들은 자주 유용, 도용 혹은 위조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었다.¹⁾

이러한 보호요구에서 지리적표시가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인정받으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측면에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한 것이 1993

1) WIPO, Intellectual Property Readind Material 1995, 241쪽. 특허청, 지적재산권총론, 421쪽 (1997. 12)

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위조상품 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측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이며, 동 협정에서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지리적표시란 어떠한 개념이며, TRIPs 협정이전에는 지리적 표지 보호에 대한 어떠한 보호규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TRIPs 협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조항 및 WTO 뉴라운드 협상과제로 되어 있는 포도주 등에 대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 설치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소개, 또한 이러한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규정에 따른 국내 주류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논술하고자 한다.

II. 地理的表示(geographical indication) 保護의 沿革과 概念

1. TRIPs 協定 以前의 地理的 標識 保護에 관한 國際規範

가. 파리協約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TRIPs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다자간 조약에서 논의되어 왔었는데 최초로 국제적인 조약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파리협약” 이었다.

“파리협약”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출처표시”를 산업재산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²⁾, 원산지 표시와 출처표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및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 그러나 개별국가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과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표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나.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協定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⁴⁾에서는 파리협약을 모체로 하는 특별협정으로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기만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출처를 표시한 상품의 회원국에의 수입을 금지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일반공중을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개별국가에서 일반명칭화(become generic)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일반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파리협약에 비해 보호수준은 높지만, 동 협정은 '99년 2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 단지 31개국만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되지는 못하였다.

다.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協定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⁵⁾에서는 원산지 명칭은 세계재산권기구인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되어

2) 파리협약 제1조

3) 파리협약 제10조

4)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of April 14, 1891

5)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October 13, 1958

그 원산지 명칭이 본국에서 보호되는 한, 회원국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국제조약으로 제품의 품질과 특성이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규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동조약은 '98. 5월 현재 18개국만이 가입하여 가입국 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보호의 전제조건으로서 본국에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파리협약, 마드리드협정, 리스본협정과 같은 WIPO 관장조약에 의한 지리적표시 보호의 내용과 수준은 제한적이었으며,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조치나 구제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가 매우 불완전하고 비효과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비판되면서 TRIPs 협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구제절차와 제재절차를 갖추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지리적표시 보호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2. TRIPs 協定上 地理的表示의 概念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따라서 지리적표시로 인정받으려면 원산지의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정의규정상 “본질적으로 비롯되는(essentially

attributable)”의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WTO 회원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⁷⁾.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토양, 기후, 동물군이나 식물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⁸⁾.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은 파리협약이나 마드리드협약에서는 지리적표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리스본 협정상 원산지 명칭에 관한 규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여 왔으며, 따라서 지리적표시는 WIPO 체제의 리스본협정상의 원산지 명칭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진도” 또는 “안동”이 종류주의 지리적표시로서 인정받으려면 먼저 “진도”나 “안동”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홍주”나 “소주”라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진도나 안동에서 생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TRIPs 협정에서 정의하는 지리적표시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지리적표시로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 지방, 국가명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리적표시와 어떠한 기호나 도안 등의 상징을 통해 그 지역, 지방, 국가를 간접적으로 연상케하는 간접적인 지리적표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지리적표시⁹⁾의 보호대상이다.

III. TRIPs 協定上 地理的表示의 保護 内容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제Ⅱ

6) TRIPs 협정 제22조 1항

7) 최성우, 지리적표시의 상표법상 보호 -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7조제1호제11호를 중심으로 -

8) A. Devletian, La Protection des Appellations d'origine et des Indications de Provenance 4(1968); Albert CONRDA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TRIPs Agreement” P33에서 재인용

9) 마드리드협정 제1조는 간접적인 지리적 명칭도 규정하고 있다.

부 제3절 제22조~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지리적표시에 대한 정의 규정¹⁰⁾, 지리적표시의 일반적 보호 규정¹¹⁾,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¹²⁾, 예외규정 및 기타 규정¹³⁾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地理的表示에 대한一般的保護

일반적으로 포도주와 증류주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당해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모든 수단의 사용과 파리협약 제10조의 2에서 의미하는 부정 경쟁행위¹⁴⁾를 구성하는 모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공중에게 원산지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초콜렛에 “스위스 ○○초콜렛”이란 상표를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상표에 스위스라는 직접적인 지리적 표시는 쓰지 않더라도 알프스 산이나 마테호른봉과 같이 간접적으로 스위스를 상징하는 표시를 쓸 경우¹⁵⁾ 중국산이 아닌 상품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상표를 부착하거

나, 프랑스 파리의 제품이 아닌 상품의 상표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영국의 제품이 아닌 상품에 런던을 연상케하는 타워브리지를 배경으로 하는 상표를 부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진정한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야기케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관련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장사용의 금지는 물론, 상표출원시 거절되며,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될 수 있는 것이다.

2. 葡萄酒와 蒸溜酒에 대한 追加的保護

UR협상시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EU국가와 소극적인 미국, 일본간의 타협안에 의해 일반적인 지리적표시는 “소비자 오인 혼동”을 전제로 하되, EU국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 별도로 “소비자의 오인 혼동”的 우려가 없을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인 지리적표시의 보호보다 훨씬 강화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즉, ①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허위의 지리적표시는 물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에도 ‘종류(kind), 형(type), 풍(style), 식(imitation)’ 등의 표현을 병기한 지리적표시도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② 포도주와 증류

10)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11) TRIPs 협정 제22조 2항~4항

12) TRIPs 협정 제23조

13) TRIPs 협정 제24조

14) 파리협약 제10조의 2의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는 다음과 같다.

- ①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② 경쟁자의 신용을 저해하는 허위의 주장
- ③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주장

15) 직접적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인 지리적표시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어떠한 대표적인 상징에 의하여 그 지리적표시를 연상케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간접적인 지리적 표현이라고 하며 모두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경우 금지된다.

주의 지리적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일반공중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거절 또는 무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③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별개의 지리적표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호를 하되 일반공중 또는 소비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혼동을 막을 수 있는 실체적인 방법을 정할 것을 의미화하고 있다.

따라서 ①과 관련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에 “보르도식 포도주, 캘리포니아”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캘리포니아)는 제대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하더라고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¹⁶⁾. ②와 관련하여 향후 (주)진로에서 선의로 “진로 chateau”를 상표로 출원할 경우 “chateau”라는 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때문에 거절되며, 등록 반더라도 5년의 제작기간내에 무효될 수 있게 된다¹⁷⁾. 또한 ③과 관련하여 만약 프랑스와 스페인에 포도주에 대한 “보르도”라는 지명이 병존하는 경우에 “프랑스 보르도 포도주”, “스페인 보르도 포도주”라고 명기하는 것이 이러한 실체적인 방법의 예가 될 것이다¹⁸⁾.

IV. TRIPs 協定上 地理的表示 保護의例外規定

TRIPs협정에서는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선의로 사용하거나 선의로 상표로 등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 善意의先使用者保護

회원국의 국민이나 거주자가 ① '94. 4. 15이 전 최소 10년 동안 또는 동일자 전에 선의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타회원국의 지리적표시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을 경우, 동 지리적표시를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류업계에서 '94. 4. 15 일 이전 최소 10년동안 사용되어 온 타회원국의 지리적표시나 동일자 이전에 선의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해온 지리적표시²⁰⁾는 본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사용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TRIPs 협정상 선의사용자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계속 사용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TRIPs 협정 역시 국내에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선의 사용자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관련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향후 제도정비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先商標權者保護

16) 상표심사기준 제23조의 4 해석 참고자료 2 참고

17) 안상배, “지리적표시 보호방안” 변시연구, 6쪽 '97. 7. 한빛지적소유권센타. 제작기간에 대해서는 TRIPs 협정상 제24조 7항, 국내상표법상 제76조에서 제작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특허청, WTO출범과 UR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해설, 100쪽, 1994

19) TRIPs 협정 제24조 4항

20)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Budweiser”를 들 수 있다. “Budweiser”는 13세기 이후 보헤미아의 “Budweiser”에서 맥주가 생산되었으며,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Budweiser”가 생산되었다. (이기수·황종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83쪽에서 재인용)

TRIPs 협정 제6부(경과조치)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TRIPs 협정 이행일 이전 또는 원산지국에서 지리적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TRIPs 협정은 개도국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0. 1. 1 이전에 선의로 출원·등록된 상표는 보호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97. 7. 22일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등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거절토록 하고 있으므로²²⁾, 신상표법이 발효되는 '98. 3. 1일부터는 WTO회원국내의 지리적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거절될 것이며, 등록되더라도 5년의 제척기간내에는 무효될 수 있다. 그러나 '98. 3. 1이전에 이미 선의로 상표등록되었을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당해 상표는 우리나라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할 수 있더라도 이를 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국에서도 계속 사용 가능하려면 선의의 선등록 상표를 보호하는 TRIPs 협정의 규정을 외국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 사실에 적용하여 판

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TRIPs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선의의 선상표권자 보호규정이 현재 상표법상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의 관련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향후 상표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慣用名稱化된 地理的表示

또한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표시는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따라서, "Champagne", "Cognac"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포도주의 일반명칭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계속 사용해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²⁴⁾, 유럽공동체는 "Champagne, Cognac, Noir, Chablis"와 같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내에서 보통명칭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이러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지리적표시가 일반 상품, 서비스, 포도품종의 관용명칭으로 되었는지를 현재 예시하기는 어렵고, 향후 구체적·개별적인 분쟁케이스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결이나 지리적표시 관련 양자 또

21) TRIPs 협정 제24조 5항

2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23) TRIPs 협정 제24조 9항의 규정으로서, 농림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제정의 근거 조항을 이루고 있다.

24)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 Origine v. Vintners Int'l Co., 958 F.2d 1574, 1581 (Fed. Cir. 1992)에서는 "Chablis"는 일반명칭화 되어 일반공중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27 C.F.R. s. 4.24(b)(2)(1995)는 "Chablis"도 "Champagne"처럼 동일하게 일반명칭화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Chablis"나 "Champagne"등은 보호받지 못한다.(이기수·황종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81쪽에서 재인용)

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 保護가 終了된 地理的表示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그 보호가 중단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지리적표시는 TRIPs 협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²⁵⁾ 예컨 대 프랑스의 유명한 겨자인 “Moutrade de Dijon”은 이미 프랑스에서도 그 명칭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프랑스의 어떤 겨자 생산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TRIPs 협정에 따른 Dijon의 특별한 지리적 표시로서 다른 회원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다.²⁶⁾

따라서 국내 주류업계에서도 원산지국가에서 보호가 종료된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며. 향후 우리 나라의 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를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일반명칭화 내지 관용명칭화되지 않도록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본 조항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V. WTO에서의 地理的表示 保護에 대한 向後 協商課題

WTO에서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향후 협상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지리적 표시 체제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검토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국제등록

소의 설치 문제이다.

1. 地理的表示 保護體制의 持續的인 協商 義務 및 改善을 위한 檢討

TRIPs 협정은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²⁷⁾. WTO/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체제의 개선을 위한 제1차 검토를 WTO 협정 발효후 2년 안에 개시하며. 주요국간의 보호증진을 위한 협의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²⁸⁾.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하여 계속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에 관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TRIPs 위원회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지리적표시에 관한 보호 협정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으며. 양자간 지리적표시의 보호문제는 대체적으로 양당사자의 지리적표시 목록의 상호교환을 통한 양국간의 지리적표시 보호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⁹⁾

2. 葡萄酒에 대한 國際登錄所의 設置 問題

WTO/TRIPs 이사회가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다자통보와 국제등록소 설치에 관

25) TRIPs 협정 제24조 9항

26) 이기수·황종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84쪽

27) TRIPs 협정 제24조 1항

28) TRIPs 협정 제24조 2항

29) “EU·멕시코간 주류산지표시 상호인정과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EU측은 Cognac, Scotch 등 202개, 멕시코는 Tequila, Mezcal 2개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제공하여 상호 보호를 약속하였음.

30) TRIPs 협정 제23조 4항

한 협상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³⁰⁾, WTO '96 싱가폴 각료회의 선언시 WTO/TRIPs 위원회는 '증류주'를 포함하여 포도주와 증류주 보호를 위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의 설치에 관하여 협상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따라서 WTO/TRIPs 이사회는 '97. 2월 회의에서 포도주에 대한 국제등록소의 설치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회원국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12개 회원국으로부터 정보가 제출되었고, EU는 '98. 7월 회의시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①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② 각 회원국에 통고, ③ 이의신청기간(1년)후 등록 발효 등 3단계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TRIPs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홍콩 등은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TRIPs 협정 제23조 4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도주' 이외에 '증류주' 까지 포함하고 있어 '증류주'에 대하여는 TRIPs 규정상 법적 근거가 없는³¹⁾ 상태에서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제등록소 설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에까지 국제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강요하고 있어 TRIPs 협정 제23조 4항의 규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을 하였으며, 멕시코, 쿠바, 터키 등은 국제등록의 범위를 포도주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농산물과 공산품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확대론도 주장되었다.

EU측 제안이 회원국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자 미국과 일본은 '99년 2월 TRIPs 정례회의에서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보다 느슨한 국제등록소 설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EU안보다 각 회원국의

판단여지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으로 국제등록소 설치에의 가입과 그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각 회원국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특징이다.

미국·일본안 그리고 이전의 EU제안에 대한 논의가 TRIPs 이사회 '99. 4월 정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록대상의 범위(scope)와 법적 효력 문제 등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포도주 등에 대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VI. TRIPs 協定과 國內 酒類業界와의 關聯問題 및 對應方案

1. TRIPs 協定上의 例外條項의 活用 問題

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주류업체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 나라의 주류업체가 외국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경우 과연 TRIPs 협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리적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류업체가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 당해 외국에서의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TRIPs 협정상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그러한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리적표시 위반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계속적으로 당해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향후 예측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언제부터 수출

31) 한국과 홍콩 등은 WTO '96 싱가폴 각료회의에서의 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TRIPs 협정과 같이 WTO 회원국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 되었고 그 지리적표시를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한편 당해 수출국내에서 어떠한 지리적표시가 일반 명칭화 되어 보호되지 않는지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수집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상표법상에서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선의의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쟁제기시 TRIPs 협정이 근거조항으로 논의될 것인바,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근거자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는 TRIPs 협정에서 인정되는 예외조항을 우리 국내법에 명시화하고 우리의 관련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의사용자 및 선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차기 법제정비시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2. 國內 地理的表示 登錄制度

가. 積極的 地理的表示 保護與否에 대한 論難
특허청에서는 적극적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운영할 경우 WTO/TRIPs 협정상 내국민 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MFN)에 따라 다른 모든 WTO 가맹국의 회원국에 내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지리적표시를 출원·등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원·등록되는 지리적표시는 상대적으

로 지리적표시가 적은 우리나라보다 EU연내 국을 비롯한 여타국의 지리적표시일 가능성으로 적극적 등록제도의 실익이 적으며, 더욱이 WTO/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하여 수입국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 지리적표시의 보호 가능성 여부는 수입국의 법규 및 거래관념에 따라 수입국의 법원 및 관할당국에서 결정하므로 지리적표시 보호법 제를 정비하여 국내의 “안동소주”, “진도홍주” 등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의 적극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한 지리적표시는 보호의무가 없다고 하는 TRIPs 협정 규정³²⁾을 근거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소극적으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며, 적극적으로는 농림부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農水產物品質管理法上의 地理的表示登錄制度

농림부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립

32) TRIPs 협정 제24조 9항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5호에서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산품은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는 농산물가공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리적표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³⁵⁾.

또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정의³⁴⁾규정을 두어 보호대상이 되는 지리적표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 적격으로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산물의 생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다만 지리적표시 특산물의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유일하게 한사람일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³⁶⁾.

또한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³⁶⁾를 금지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자체³⁷⁾ 등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³⁸⁾.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보호해야하는 지리적표시의 경우 '99. 7.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주정이나 주류에 관한 우리 나라의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酒類關聯 地理的表示의 海外에서의 保護 方案

비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지리적표시

가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해외에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주류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주류와 관련된 지리적표시 목록을 작성하여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같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양자협상 또는 WTO/TRIPs 이사회에서의 지리적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에 우리나라가 참가할 경우, 정부가 주류업계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반영토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RIPs 협정상 본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표시는 회원국에서도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주류업계에서 나열된 지리적표시의 경우 국내에서 보호됨을 입증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 포도주를 생산할 때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으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를 취합하여 이를 제조원료로 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포도주의 특성, 품질 등과 지리적표시가 근본적으로 관련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주가 없으며, 주로 포도주와 증류주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 보호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제18조

3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1항

3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2항

3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4. 地理的表示에 관한 商標登錄 問題

특허청에서는 TRIPs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97. 8. 22일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크게 두 조항이 개정되었다. 즉 상표법제7조제1항제14호에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종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는 한편 본 호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종류주"의 범위는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를 참고로 하되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럼, 진, 고량주, 배갈, 막걸리, 소주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리큐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켈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보르도 포도주에 미국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⁹⁾.

또한 WTO/TRIPs 협정 제24조 7항을 반영하여 좌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등록후 5년내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주류업계에서는 신상표법이 발효되는 '98. 3. 1일부터는 주류의 상품분류인 제33류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로 구성되거나 포함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상표법제7조제1항제14호에 의해서 거절된다는 점을 알고 상표출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VII. 맷음말

우리 나라의 주류업계의 경우 WTO의 출범에 따라 주류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 주류판매의 규제 완화, 주류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해외에서 보호받을 만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없으며, 주로 TRIPs 협정상 강하게 보호되는 포도주와 종류주의 경우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미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 1. 1일부터 WTO/TRIPs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포도주와 종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기존에 우리 주류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TRIPs 협정 이행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 그 당해 외국에서의 제도상 이를 계속적 으로 수출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자료 수집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TRIPs 협정에 따른 상표법개정에 따라 상표법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아래 상표출원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주류업계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주의 개발과 그 해당 지리적표시의 해외에서의 보호를 기대해 본다.

39) 상표심사기준 제23조 4호

40) 상표법 제76조